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693호

다. 제출일자 : 2021. 8. 11.

라. 회부일자 : 2021. 8. 18.

2. 제안사유

○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서울교통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과

○ 우리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1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1역사 1동선 구축 관련)

○ 생활물류지원센터(지하철역) 조성

4. 참고사항

○ 기관현황

기 관 현 황

- **설립일자** : 2017. 05. 31
- **설립목적** : 지하철(1~8호선)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조직현황**('21. 5月 기준)
  - 본 사 : 사장, 감사, 6본부, 6실, 42처
  - 현 업 : 1부문, 2원, 1단, 10센터, 59사업소
- **인력현황**('21. 5月 기준) : 정원 16,523명 / 현원 16,807명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산조치 :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2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출자 동의안 의의 및 출자 내용

○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자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1]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한 바 있음

---

1) 법률 제12687호, ’14. 5. 28., 일부개정, ’14. 11. 29. 시행

○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2]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출자 할 수 있고, 동 동의안은 강화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3]에 의거 '22년도 출자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임

○ '22년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총 3,169억 55백만원으로 '21년도 2,167억 75백만원에 비해 1,001억 80백만원(46.2%)이 증가되었음

○ 전년대비 사업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지하철 공기질 개선(696억 67백만원), 지하철 5~8호 노후시설 재투자(454억 35백만원),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293억 70백만원) 등의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44억 22백만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109억 72백만원),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101억 86백만원) 등의 사업은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

2)「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3)「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규사업으로 역사 내 교통정보(지하철·버스운행, 지하철 혼잡도 등) 및 생활정보(공기질, 날씨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하철 통합 교통정보 표출 시스템 구축(13억 13백만원)이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출자금액이 증가하였음 〔세부사항 붙임 참조〕

▌출자 동의 필요성

○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5월 기준 영업연장 308.9km, 지하철역 283개역, 전동차 3,563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약 52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전년도 당기순손실 1조 1,137억원, 부채 6조 2,635억원을 기록하여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이용승객 감소, 무임수송 손실, 대중교통 요금동결 등에 따른 손실 증가[4]로 요금수입을 통해 공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한 상황이고, 인원감축, 자산매각 등 서울교통공사 자구책[5] 또한 노조 및 관련기관 협의 미흡 등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그러나, 지하철 개통후 30여년이 지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4) 연도별 서울교통공사 손실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기순손실	3,850	5,253	5,389	5,865	11,137
무임손실	3,442	3,506	3,540	3,709	2,643

5)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추진계획('21.6.)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 시설과 전동차[6] 개선이 시급하며, 지하철 이용자 건강을 위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바 서울교통공사의 수익구조와 재무여건을 고려할 때 동 출자 동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의안의 의결은 관련법에 의거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출자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21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정부시와 협의 지연[7] 및 서울교통공사 재정난[8] 등으로 '21년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지하철 통합 교통정보 표출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은

---

6)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

구분	계	2호선 (1차)	2호선 (2차)	2,3호선 (3차)	5,7호선 (4차)	4호선 (5차)	5,8호선 (6차)	5호선 (7차)	4호선 (8차)
사업기간	'14~'25	'14~'18년	'16~'20년	'18~'22년	'18~'22년	'20~ '25년	'21~ '26년	'22~ '27년	'22~ '27년
사업물량 (칸)	1,914	200	214	196 2호선 46 3호선150	336 5호선 200 7호선 136	210	298 5호선 208 8호선 90	200	260
사업예산 (억원)	26,102	2,176	3,024	2,646	4,704	2,940	4,172	2,800	3,640
추진현황		완료	완료	제작 중	제작 중	설계 중	발주 예정	-	-

7) 1차('20.11.26.), 2차('21.02.17) .의정부시 업무협의 : 주민 반대 등이 예상되어 허용이 어려움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소재지 : 의정부시 장암동 173-8

8) 서울교통공사 신사업처-1446호('21.5.13.): ' 21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정 요청[공사재정난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조정(보류) 요청]

사업의 필요성, 공사 재정여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해야야 할 것임

붙 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추경포함)	2022년 (편성검토안)	증 감	비 고
합 계	216,775	316,955	100,18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39,769	△24,422	국비:시비:공사 = 30:35:3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8,909	88,575	69,667	국비:시비 = 30:70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22,945	41,200	18,255	국비:시비:공사 = 25:37.5:37.5
생활물류지원센터(지하철역) 조성	400	400	-	시비:공사 = 50:50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1,170	-	△1,170	시비:공비 = 50:50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15,264	△10,186	시비 전액 출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29,370	21,362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2,927	11,955	△10,972	
지하철 통합 교통정보 표출 시스템 구축	-	1,313	1,313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72,385	45,435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	4,194	4,194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3,572	10,505	6,934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400	2,025	625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3,300	-	△3,300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사업	2,000	-	△2,000	
지하철 환기구 개선	830	-	△830	
지하철 지향성 스피커 설치	200	-	△200	

구 분	2021년 (추경포함)	2022년 (편성검토안)	증 감	비 고
지하철역 E/S 핸드레일 소독기 설치	1,100	-	△1,100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294	-	△294	
서울교통공사 철도 연장선 운영 효율화 방안	50	-	△50	
지하철 테마역 개발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50	-	△50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150	-	△150	
서울교통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50	-	△50	
서울교통공사 적정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100	-	△100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5,300	-	△5,300	
도시철도 공공와이파이 시범설치 타당성 용역	100	-	△100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2,000	-	△2,000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 소화장비 설치	1,000	-	△1,000	
지하철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200	-	△200	
서울교통공사 영상기록장치 설치 설계용역	100	-	△100	
철근 탐상기 구매	300	-	△300	
1, 4호선 전동차 VVVF 장치 내 컨버터/인버터 스택 개량	600	-	△600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ECU) 개량	400	-	△400	
차축 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	300	-	△300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200	-	△200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200	-	△200	
서울교통공사 모의운전연습기 설치	1,500	-	△1,500	
장애인 전용발권 키오스크 시범설치	30	-	△30	
전동차 예지정비시스템 구축(5,7호선)	500	-	△500	